「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근한 의원 외 1인

2. 찬 성 자 : 김민성 의원 외 10인

3. 제안이유

○ 기존 구미시 공공시설 조례 전반에 걸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감면·우대 규정을 신설하여 병역명문가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병역명문가 및 그 가족에 대한 감면·우대 정비(안 제1조～제9조)

5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, 제28조
- 「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」 제2조, 제24조

○ 부서검토: 안전재난과 외 8개 부서 의견제출

○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○ 기　　타: 신·구조문대비표

6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기존 구미시 공공시설 조례 전반에 걸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감면·우대 규정을 신설하여 병역명문가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, 지역사회 전반에 보훈과 존중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보훈 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됨.

- 조례 개정에 따라 향후 병역명문가 수 증가와 시설 이용자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, 중·장기 관점에서 재정 소요 변화와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관리체계 마련이 요구됨.

- 아울러, 감면·우대 적용 과정에서 부서별 기준이 상이하여 민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·서류·인증기준을 일원화하고, 병역명문가 대상자의 실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기반의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.